

2025 선급기술규칙 정오표



2025

※ 본 정오표는 2025년 선급기술규칙 인쇄본에 대한 것으로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PDF 파일의 오류는
정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8 편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적용지침〉 - 8편 제 7 장 화재차단 제 6 절 통풍장치 [규칙 참조] 601. ~ 604. <생략> 605.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덕트 (2017) 1.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덕트는 다음 요건에 따른다. (2021) (1)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덕트는 원칙적으로 다른 덕트와 독립되어야 한다. 이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덕트와 연결된 덕트에 원격조작 가능한 자동폐쇄형댐퍼를 설치하고,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덕트 내부 끝단 하부의 방화댐퍼와 동시에 폐쇄할 수 있도록 한다. (2) 우리 선급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구역 내에 조리실 레인지용 배기덕트가 통과하는 모든 장소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로 간주한다. (3) 1항 (3)호 및 3항 (4)호에서 언급한 고정식 소화장치는 프리엔지니어드 (pre-engineered) 갤리 덕트용 고정식 소화장치의 성능 표준인 ISO 15371을 적용한다. ISO 15371을 따르지 않는 탄산가스장치는 규칙 8장 503.의 1항 (1)호 또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표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2. 규칙 605.의 1항에서 그리스나 기름을 축적하기 쉬운 조리실 레인지로부터 배기덕트까지 요건을 조리실 레인지로부터 모든 배기덕트까지 적용한다. 3. 규칙 605.의 1항과 3항에서 방화댐퍼는 강재여야 하고 통풍 정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Res. A.754(18) 또는 FTP 코드 부록1의 3편에 의한 화재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조리실 덕트 바깥쪽에서만 A급을 적용한다. 또한 가연성물질이 있는 구역이란 통상 모든 거주구역에 적용된다. ⚡	〈적용지침〉 - 8편 제 7 장 화재차단 제 6 절 통풍장치 [규칙 참조] 601. ~ 604. <생략> 605.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덕트 (2017) 1.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덕트는 다음 요건에 따른다. (2021) (1)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덕트는 원칙적으로 다른 덕트와 독립되어야 한다. 이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덕트와 연결된 덕트에 원격조작 가능한 자동폐쇄형댐퍼를 설치하고,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덕트 내부 끝단 하부의 방화댐퍼와 동시에 폐쇄할 수 있도록 한다. (2) 우리 선급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구역 내에 조리실 레인지용 배기덕트가 통과하는 모든 장소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로 간주한다. (3) 1항 (3)호 및 3항 (4)호에서 언급한 고정식 소화장치는 프리엔지니어드 (pre-engineered) 갤리 덕트용 고정식 소화장치의 성능 표준인 ISO 15371을 적용한다. ISO 15371을 따르지 않는 탄산가스장치는 규칙 8장 503.의 1항 (1)호 또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표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2. 규칙 605.의 1항에서 그리스나 기름을 축적하기 쉬운 조리실 레인지로부터 배기덕트까지 요건을 조리실 레인지로부터 모든 배기덕트까지 적용한다. 3. 규칙 605.의 1항과 3항에서 방화댐퍼는 강재여야 하고 통풍 정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Res. A.754(18) 또는 FTP 코드 부록1의 3편에 의한 화재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조리실 덕트 바깥쪽에서만 A급을 적용한다. 또한 가연성물질이 있는 구역이란 통상 모든 거주구역에 적용된다. 본 3항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된다. ⚡	- IACS UI SC118(Rev.2) Exhaust duct from galley ranges (1) 상기의 UI는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8편 7장 605.3에 반영되어 있음. 당 UI의 2015년 (Rev.2) 개정 당시 2016년 1월 1일 이전 건조된 선박까지만 적용되도록 제한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협약법 제17조 제1항 제2호(협조부서 선급기자재팀) 지정되면서, 규칙팀으로 본 건 전달 되지 않았음) (2) 2016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참조를 위해, 해당 규정에 2016년 이전 건조된 선박에 적용된다는 문구만 추가하기로 함(오기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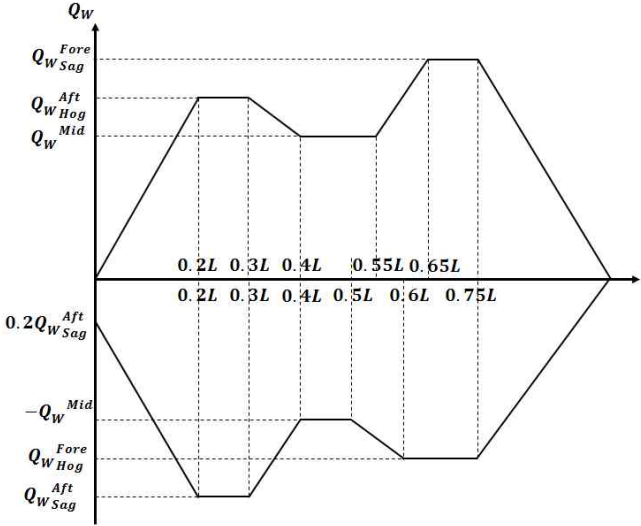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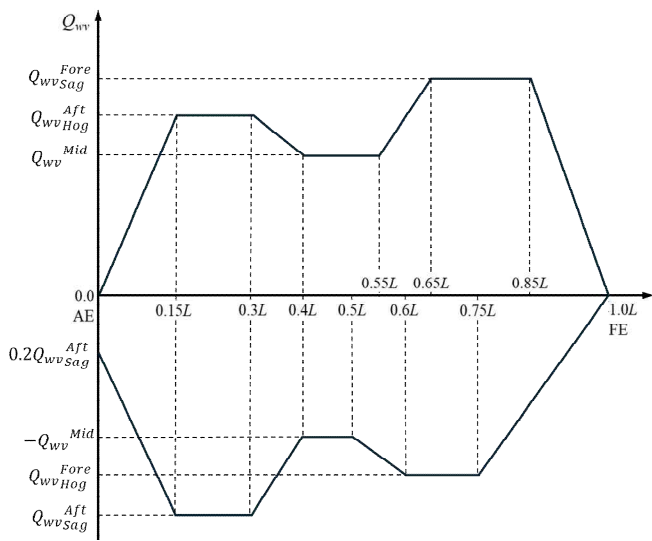
제 9 편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규칙 9편> 제 2 장 하역설비 제 4 절 크레인 403. 강도 및 구조 8. 고정포스트 (1) 고정포스트는 303.의 4항 (1)호의 요건에 따라 선체구조에 유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규칙 9편> 제 2 장 하역설비 제 4 절 크레인 403. 강도 및 구조 8. 고정포스트 (1) 고정포스트는 303.의 6항 (1)호의 요건에 따라 선체구조에 유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참조 오기 수정

제 13 편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규칙 13편〉 1부 4장 하중 제 1 절 ~ 제 7 절 〈생략〉 제 8 절 적하상태 1. ~ 3. 〈생략〉 4. 산적화물선 4.1 구체적인 설계하중 조건 4.1.1 ~ 4.1.5 〈생략〉 4.1.6 강재코일 또는 중량 화물 다음의 주의사항을 적하지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u>“이중저의 국부강도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강재코일 또는 중량 화물을 운송하거나 적하지침서에 운송 화물로 명시되지 않는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화물의 최대 허용 질량과 최소 요구 질량은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u>	〈규칙 13편〉 1부 4장 하중 제 1 절 ~ 제 7 절 〈현행과 동일〉 제 8 절 적하상태 1. ~ 3. 〈현행과 동일〉 4. 산적화물선 4.1 구체적인 설계하중 조건 4.1.1 ~ 4.1.5 〈현행과 동일〉 4.1.6 강재코일 또는 중량 화물 다음의 주의사항을 적하지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u>“선박이 이중저의 국부강도에 불리한 영향을 주며 적하지침서에 화물로서 명시되지 않은 강재코일 또는 중량 화물과 같은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최대 허용 및 최소 요구 화물 질량은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u> (원문) 4.1.6 Steel coils or heavy cargoes The following note is to be included in the loading manual: “Where the ship engages in a service carrying such cargoes as steel coils or heavy cargoes that 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local strength of the double bottom and which is not described as cargo in the loading manual, the maximum permissible and the minimum required mass of cargo are to be considered specially.”	- 영문 요건과 일치

제 14 편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규칙14편〉 제 4 장 하중 제 4 절 선체거더하중 3.2 수직파랑굽힘모멘트  그림 4 : 선박 길이에 따른 수직 파랑 전단력 Q_{wv}의 분포	〈규칙14편〉 제 4 장 하중 제 4 절 선체거더하중 3.2 수직파랑굽힘모멘트  그림 4 : 선박 길이에 따른 수직 파랑 전단력 Q_{wv}의 분포	- 수직 파랑 전단력은 U R S11A 값을 적용. 전단력 분포계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UR S11A 그래프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4장 하중 제 1 절 ~ 제 2 절 〈생략〉 제 3 절 선박 운동 및 가속도 1. 〈생략〉 2. 선체 운동 및 가속도 2.1 〈생략〉 2.2 무게 중심에서의 선박 가속도 2.2.1 ~ 2.2.4 〈생략〉 2.2.5 종동요 가속도 종동요 가속도 a_{pitch}(rad/s²)는 다음 식에 의한다. $a_{pitch} = f_p \left(\frac{3.1}{\sqrt{gL}} + 1.4 \right) \phi \frac{\pi}{180} \left(\frac{2\pi}{T_\phi} \right)^2$ ϕ : f_p를 1.0으로 하여 구한 종동요 각 f_p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f_p = f_{ps}$ $f_p = 1.0$ 강도평가의 경우 피로평가의 경우 〈생략〉	4장 하중 제 1 절 ~ 제 2 절 〈현행과 동일〉 제 3 절 선박 운동 및 가속도 1. 〈현행과 동일〉 2. 선체 운동 및 가속도 2.1 〈현행과 동일〉 2.2 무게 중심에서의 선박 가속도 2.2.1 ~ 2.2.4 〈현행과 동일〉 2.2.5 종동요 가속도 종동요 가속도 a_{pitch}(rad/s²)는 다음 식에 의한다. $a_{pitch} = f_p \left(\frac{3.1}{\sqrt{gL}} + 1.4 \right) \phi \frac{\pi}{180} \left(\frac{2\pi}{T_\phi} \right)^2$ ϕ : f_p를 1.0으로 하여 구한 종동요 각 f_p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f_p = f_{ps}$ $f_p = 0.92 \left[(0.36 - 0.1f_T) - (11.6 - 5.17f_T)L \times 10^{-9.34} \right]$ 강도평가의 경우 피로평가의 경우 〈현행과 동일〉	- 계수를 수정함.

기타규칙 및 지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제 4 장 설계조건 제 2 절 강도계산 201. 구조해석 구조물은 1장 107.에 규정하는 모든 상태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의 하중상태에 대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조해석을 하여야 한다. Ⓡ	〈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제 4 장 설계조건 제 2 절 강도계산 201. 구조해석 구조물은 1장 207.에 규정하는 모든 상태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의 하중상태에 대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조해석을 하여야 한다. Ⓡ	- 단순 오기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규칙> 제 3 장 구조, 강도 및 재료 제 4 절 강도계산 401. 구조해석 구조물은 1장 107.에 규정하는 모든 상태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의 하중상태에 대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조해석을 하여야 한다. ⚓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규칙> 제 3 장 구조, 강도 및 재료 제 4 절 강도계산 401. 구조해석 구조물은 1장 207.에 규정하는 모든 상태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의 하중상태에 대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조해석을 하여야 한다. ⚓	- 단순 오기